의 안 2339 버호

【울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】

검 토 보 고

1. 검토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9. 30.(월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9. 30.(월)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10. 14.(월)

2. 제안이유

○ 행정의 전문화·다양화로 업무 수행시 종합적 법률 해석이 요구되는 자문과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률 자문 인력을 확충하여 활용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 확대(안 제2조)
 - 고문변호사 '3명' 이내 → '5명' 이내

4. 근거법규

○ 「지방자치법」제13조, 제28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업무 수행시 전문적 법률 해석이 요구되는 자문과 소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률 자문 인력을 확충・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 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근 거 법 규

지방자치법

-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 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〈개정 2023. 8. 8., 2024. 1. 9.〉
 - 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 - 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 위치 및 구역의 조정
 - 나. 조례 · 규칙의 제정 · 개정 · 폐지 및 그 운영 · 관리
 - 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 - 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 - 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 · 후생복지 및 교육
 - 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 - 사. 예산의 편성 · 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 - 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 - 자. 공유재산(公有財産) 관리
 - 차. 주민등록 관리
 - 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- 제28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